국가연구개발(R&D) 사업 주요 적발사례

2017. 3.

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

목 차

1. 대상기관별 적발사례 1
가. 대학(산학협력단) : 21개 대학, 77건 적발
① 참여연구원(학생)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, 시적(私的) 사용 … 1
② 동일한 중빙서류를 두 개의 과제에 첨부, 이중 사용 … 1
③ 회의비를 참여연구원의 식사 비용으로 부당 사용 1
④ 과제 관리 소홀 ······ 1
나. 중앙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 : 17개 기관, 47건 적발
5 중앙부처가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, 지자체와 수행기관이
공모하여 시업자 선정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공문서 발급 2
⑥ 10여년간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 유출, 그 대기로 금품수수 등 ··· 4
7 연구시업 관련 국외출장시 일정의 대부분을 시적(私的) 관광 5
다. 민간기업 : 34개 업체, 43건 적발
⑧ 연구원 허위 등록 후 인건비 횡령5
9 연구재료 과다 구입 후 타 용도로 사용5
2. 진행단계별 적발사례 6

1 대상기관별 적발사례

가. 대학(산학협력단)

- 21개 대학에서 **77건이 적발**되었으며,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R&D 연구비는 **연간 4.3조원**(22.8%) **규모**임('15년 18.9조원 기준)
 - 77건 중 **집행단계가 74건**(96.1%)으로 대부분이며, 정산단계 2건, 사후관리단계 1건 적발

① 참여연구원(학생)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, 사적(私的) 사용

- **대 산학협력단 교수**는 『△△용 모듈 및 시스템 개발('15.11월~'16.10월, 1억원)』등 1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,
 - '13~'15년까지 참여연구원(학생) 25명의 인건비 통장을 교수가 직접 관리하며 해외연수비용 및 개인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총 1억 3,062만원 유용(수사의뢰)

② 동일한 증빙서류를 두 개의 과제에 첨부, 이중 사용

- ○ 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△ △ 범부처 사업단의 세부과제 2건을 수행하면서, '15.9월 A과제*에서 구입한 재료의 거래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B과제** 재료 구입 시에도 동일하게 첨부한 후 거래명세서에 인수자 서명을 하고 연구비카드로 재료비 집행
 - * A과제 : 연구기간('14.11월~'15.11월), 연구비(1억 5천만원)
 - ** B과제 : 연구기간('14.11월~'15.10월). 연구비(1억 5천만원)

③ 회의비를 참여연구원의 식사 비용으로 부당 사용

- **○ 대 교수는** 『△△글로벌 연구센터("11.9월~'18.8월, 9억 6천만원)』 과제를 수행하면서,
 - '12.7월~'16.5월까지 월례회의 등 연구와 관련없는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비로 참여연구원의 평일 점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총 51회에 걸쳐 1,480만원 집행

4 과제관리 소홀

○ ○ ○ 대 산학협력단은 '14.1월~'16.10월까지 교수 등 634명이 연구과제가 종료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노트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관리 소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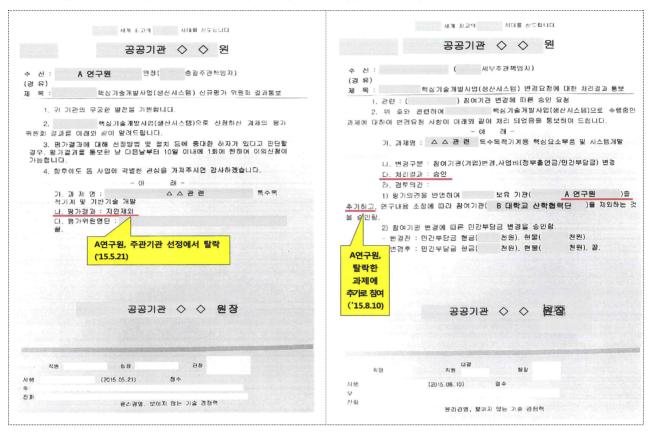
나. 중앙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

- 17개 기관에서 **47건이 적발**되었으며, 공공기관 등에 지원되는 국가R&D 연구비는 **연간 9.4조원**(49.7%) 규모임('15년 18.9조원 기준)
 - 47건 중 집행단계가 32건(68.1%)으로 가장 많았고, 대학과 민간기업에 비해 과제·기관선정 및 사후관리 단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(11건중 7건)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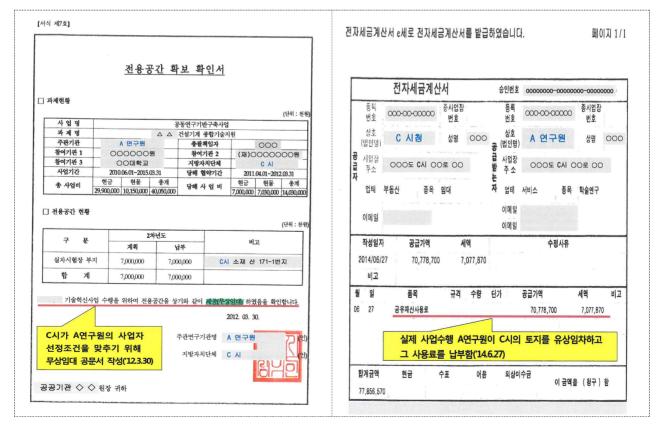
⑤ 중앙부처가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,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공모하여 사업자 선정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공문서 발급

- □ 민간기업인 **A연구원**과 관련하여
 - '15.4월, 중앙부처 ○○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공공기관인 ◇◇원이 발주한 『△△ 관련 특수목적기계 등 개발(예산: 229억원)』과제 주관기관 선정 시 민간기업인 A연구원 컨소시엄은 B대학교 컨소시엄과 경쟁하여 탈락
 -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·감독 권한 등을 가진 ○○부 소속 R&D사업 담당자는 탈락한 위 A연구원의 청탁*을 받고
 - 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담당하는 위 ◇◇원에 재평가를 지속 요구하며 과제 승인을 지연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기 탈락한 위 A연구원을 위 B대학교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(5년간 29억원)시킴
 - * 위 A연구원 원장은 위 ○○부 공무원 출신으로 위 A연구원이 주관기관 경쟁에서 탈락되었음에도 위 ○○부 담당자에게 사업참여를 수차례 청탁
 - 지방자치단체 C시는 ◇◇원에서 발주한 『△△건설기계 종합지원사업 (예산: 250억원)』과제와 관련하여, 입찰에 참여한 위 A연구원(민간기업)과 공모하여 사업자 선정의 필수 조건인 '지자체 토지 무상제공'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공문서를 발급
 - 위 A연구원 원장은 『△△건설기계 종합지원사업』등 정부출연 연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, '14.2월~'16.11월까지 연구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간접비 약 2억 4천만원* 부당집행(수사의뢰)
 - * (경조사비) 기관 업무추진비에서 대외 경조사비 명목으로 매월 200~250만원씩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는 등 총 9,668만원 사적 사용 (골프) 총 20회에 걸쳐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612만원을 사업비로 집행 (화환 구입비) 경조사 화환구입비로 총 1,719만원을 사업비로 부당집행 (대리운전비) 매월 고정적으로 법인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비 총 1,615만원을 사업비로 부당집행 등

< A연구원이 주관기관 선정에서 탈락한 후, 소관부처 담당자의 압력으로 과제를 선정받은 B대학교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한 사례 >



< A연구원은 지자체 C시 소유의 토지를 유상임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 선정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C시와 공모하여 무상임대라고 공문서를 작성한 사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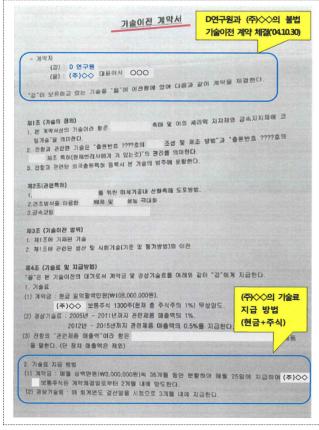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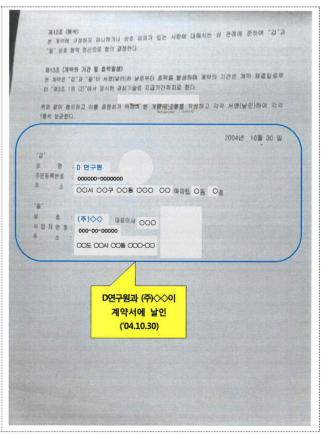
⑥ 10여년간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 유출, 그 대가로 금품수수 등

○ ○○연구원 책임연구원 D는

- '04.10월~'13.4월까지 ㈜〉〉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소속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불법 이전해 주고 그 대가로 총 53회에 걸쳐 3억 1,610만원과 회사주식 1,300주 수수
- 또한, 연구과제와 관련된 **외부 기술자문**은 기관 차원에서 **공식 계약을** 체결하여 투명하게 시행하여야 함에도, ㈜��에 소속기관 모르게 개인적으로 기술자문*을 해주고 그 대가로 2억 4,746만원 수수
- * ('01~'04년) ㈜◇◇의 제품관련 자문 대가로 **총 4,746만원** 수수 ('11~'14년) ㈜◇◇의 정기 기술자문을 해주고 **총 2억원** 수수
- '13년부터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회계부서의 검수 및 대금지급 직후 자신의 연구실에서 그 물품을 되돌려주고 차액을 수수하는 방식 으로 총 1,978만원을 횡령하였고, 직무 관련업체(납품업체·공동연구업체 등)로 부터 납품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1,120만원 상당의 금품도 수수(수사의뢰)

< 불법 기술이전 계약서 >





[7] 연구사업 관련 국외출장 시 일정의 대부분을 사적(私的) 관광

- ○ **연구원 책임연구원**은 『△△ 관련 기술개발('15.1월~12월, 7.7억원)』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면서,
 - '15.4월에 동 연구사업 관련 미국 출장(17박 19일, 출장비 617만원)시 연구활동은 2일간만 실시하고, 나머지 기간은 개인적으로 미국 서부지역(라스베가스 등) 일대 관광

다. 민간기업

- 34개 업체에서 **43건이 적발**되었으며, 민간기업에 지원되는 국가R&D 연구비는 **연간 4.0조원**(21.2%) 규모임('15년 18.9조원 기준)
 - 43건 중 **집행단계가 38건**(88.4%)으로 가장 많았고, 과제·기관 선정단계 1건, 정산단계 2건, 사후관리단계 2건 적발

⑧ 연구원 허위 등록 후 인건비 횡령

- ㈜○○은 『△△ 관련 해외수출용 콘텐츠 개발('15.10월~'17.5월, 5.4억원)』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는 해당 연구 과제에 **직접 참여하는 연구원** 에게 지급해야 함에도,
 - '15.10월~'16.5월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5명을 참여인력으로 허위 등록한 후, 이들의 인건비 등을 회사 운영 계좌로 되돌려 받아임대료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총 1억 962만원 횡령(수사의뢰)

⑨ 연구재료 과다 구입 후 타 용도로 사용

○ ㈜○○은 『△△ 파이프 국산화 기술 개발('15.7월~'17.7월, 8억원)』과제를 수행하면서 계획된 재료량보다 부풀려 베어링류를 구입한 후 연구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장비·재료비 3,200만원 횡령 (수사의뢰)

2 진행단계별 적발사례

- □ 위반사항 총 167건(부당사용액 203억원) 적발
 - ㅇ 진행단계별 적발건수



○ 집행단계가 144건(86.2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대학(산학협력단) 및 민간기업 등의 수행기관에서 적발이 많았음

□ 주요 사례

- 1) 연구기획 및 과제・기관 선정 단계(5건)
 - 신하기관에 특정기관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압력행사 등 2건(사례 5)
 -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공모하여 사업자 선정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공문서를 발급한 사례 등 3건(사례 5)
- 2) 집행 단계(144건)
- < 사적(私的) 사용 등>
 - 연구원 인건비 사적 사용 등 15건(사례 ①, ⑧)
 - 연구장비·재료비 사적 사용 등 23건(사례 ⑨)
 - 공공요금 등 간접비 사적 사용 등 5건(사례 5)

< 집행 부적정 등>

- 연구활동비·과제추진비·연구수당 집행 부적정 등 75건(사례 ③)
- 도덕적 해이 등 기타 26건(사례 6), 7)
- 3) 정산 단계(12건)
 - 연구비 허위 정산 등 정산 부적정 12건
- 4) 사후관리 단계(6건)
 - 10여년간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 유출, 그 대가로 금품수수 등 1건(사례 6)
 - 연구결과 허위보고 및 부당 사용액 환수조치 미이행 등 5건